

■ 토론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문제, 그 개선방안

▶ **이광택(사회)**: 지금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지구화가 심화되면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훈 : 첫마디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외국인취업제도는 연수취업제도입니다. 연수취업제도는 1년 간 연수를 거친 자 중에서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 간 근로자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전에는 연수생이라는 형태를 사용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 연수생도 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연수생을 보면, 근로자가 9.6%구요, 연수생은 3만 9천, 그러니까 합법취업자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수준인데, 나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합법취업자가 약 10%, 그 다음에 연수생이 10%, 나머지 80%는 불법취업자입니다. 즉 법무부 노동법 상 불법취업이란 옳지 않다는 논의도 있고 해서 불법취업자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불법체류근로자, 근데 근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례는 'undocumentary works' 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저는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의노협이든, 많은 분들도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의 구성은 10%이지만 그 가운데 80%는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력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한 게 86년 아시안게임부터라고 보면, 이미 16년 간 이런 정책을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인력정책은 연수취업제도지만 실질적인 것은 불법체류자를 노동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외국인력제도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군가 외국 노예를 수입하려고 의도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현대판 노예를 양산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중 80%가 미등록 노동자입니다. 미등록노동자 중 상당수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체류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인권침해, 세 번째는 송출비리의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의 문제를 보게 되면 저는 이 표현을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많은 나라,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근데 불과 2년



전 60%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80%까지 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비율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많다. 근로자가 10%이고 나머지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10%를 감안하더라도 말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합법체류자인 연수생보다 불법체류자인 미등록노동자들이 임금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률적으로 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법체류자에게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분을 100%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행위 자체는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연수생이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오히려 적다는 것입니다. 사후 소급의 의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된다고 하는 세 가지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더 많고,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법률적으로도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더 보호를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우리정부가 이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어쨌거나 처음 오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권침해가 양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TV프로그램이든, 가까운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한번만 방문해 보시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또 인격적인 침해를 많이 겪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어느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체류자가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했었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임금이 체불이 됐을 때, 혹은 산재피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불법체류자들은 너 불법체류자니 신고하겠다고 하면 가령 고용부분 임금을 안주고 있는 자에 월급을 달라고 하면 너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하고 신고를 해 버려서 강제로 추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질이 간혹 걸린다는 거죠. 이런데 불법체류자들은 이것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의, 미등록노동자들의 인권침해라는 것은 상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산업재해, 욕설, 폭행, 성폭행,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를테

면 폭행피해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한번 대략 집계해 본 겁니다. 지금 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에 나와 있는 건데요. 몇 대 맞았다고 해서 상담소에 가서 상담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할 정도의 폭행이라면 상당히 심한 폭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2000년에 200여건이 넘었던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여건이 얼마만큼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설겁니다. 외국인노동자 30만 명이 있는데 200명 맞았으면 적지 않을까..? 그런데 인권의 문제가 확률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일단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률적으로 집계할 만큼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일본의 상담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에 있는 한 상담소에 갔었는데 거기의 경우 폭행피해자가 몇 명 접수되었는가를 봤더니 95년에 1명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몇 년째 없다고 합니다. 한 대 얻어맞고 찾아온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일본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제도 속에 있습니다. 기능실습제라고 하는 거요. 근데 일본은 적어도 인권유린과 같은 상태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게 한가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연수생들을 관장하는 쪽에서는 '그래 그 말이 맞아 연수생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인권침해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라면 모든 관련자들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연수생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수생에게서 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근로자이고 자본가가 합리적인 자본가라고 한다면 근로자를 잘 돌볼텐데, 실상은 분명히 연수생에게서도 인권침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박천웅목사님이 와 계시지만, 외노협에서 두 번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인권백서"라는 게 200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를 발간을 했었는데, 2000년 것은 중기협을 통한 산업연수생들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구요, 2001년에는 중기협과 해외투자기술연수생, 미등록노동자까지 포괄해서 봤는데, 연수생들도 인권침해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수생들보다 미등록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노동자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와 계십니다만 정부가



단속을 안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단속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성과를 보면 별로 못했다는 겁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존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은 불법체류자들이 일하며 살아가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연수생들도 내가 뭐 합법적으로 있어봤자 기껏해야 3년 있을 수 있는데, 내 친구 보니까 그 친구 10년 있는데 월급도 많이 받고,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연수생보다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도 많이 받고 공장주만 잘 만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생들은 지정된 연수업체를 이탈해서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산업연수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91년 10월 31일에 청와대 모임에서 결정이 되어서 91년부터 실시가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94년부터입니다. 94년에 중기협을 통해서 산업연수생들을 도입했습니다. 그 1차 연수생들, 중국동포들은 91% 이상이 다 사업체를 이탈했었어요. 점점 그 비율이 낮아졌지만, 절반 가까이가 사업체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체를 이탈하는 것이 높아지면 현재 우리제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연수생이 사업체를 이탈하면 그 업주에게 연수생을 다음에는 배정해주지 않습니다. 업주로 봐서는 이중의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공탁금, 기탁금은 중기업 대행이고요, 또 이 연수생이 돌아가면 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면 당연히 이탈을 못하도록 할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일 겁니다. 한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외노협에서 집계된 것,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95년 명동성당 농성사건이 터졌던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노동자들이 연수생들이 도망을 가니까 월급을 귀국할 때 절반 돌려주겠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꽤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죠. 통장 보여주고 돈은 못 찾도록 하면 도망 못 갈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면 내 월급 절반을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 저걸 나한테 줄지 안 줄지는 나중에 봐야 아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외출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면, 교회로 가든, 성당을 가든, 혹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면 결국은 취업정보를 얻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외출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밤에 잠잘 때조차, 도망

을 주로 밤에 하니까, 극히 적은 사례입니다만 기숙사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이진 감금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노예입니다. 외출금지를 하는 것도 자유로운 노동자에게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91년 1월에 명동성당에서 네팔출신 산업연수생 13명이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했고요, 그 당시가 95년입니다만 그때가 한 10월경인가요, 정부합동으로 해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대안이 뒤에 제가 소개할 고용허가제도였습니다. 그 때부터 이미 나왔는데, 고용허가제는 뒤에 하고, 하여간 인권침해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선발을 둘러싼 각종비리가 빈번했습니다. 흔히 송출비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그 나라의 송출기관에서 말하는 것 보다 실제로 연수생들이 혹은 불법체류자들을 만나보면, 훨씬 더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산업연수제도의 경우 불법체류자보다 연수생들의 취업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가 없으나, 조사를 해보면 불법체류자들은 브로커비용을 다 주고 오거든요, 다 주고 오는데 그 이상의 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송출비리가 산업연수제도 혹은 현재의 연수취업제도의 필연적 산물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를 베껴왔는데, 기능실습제도를 실행하면서 송출비리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의 NGO 활동가들도 막대한 송출비리가 있냐고 하면 송출비리는 크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저의 발제문에 송출비용이 1000만원, 1500만원까지 나온다고 돼 있지요. 노동연구원에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실지로는 중기협에는 얼마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방문해서 확인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시 노동부 부국장을 면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는 취업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미화 \$2,00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2,000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집 몇 채 되는 가격인데. 한국에 갔다 온 근로자들을 만났거든요. 보통 한국에서 만난 것보다 자기네 나라에서 만나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였냐고 물었더니 \$4,000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2,000은 어디 갔냐고 했더니 그걸



몰라서 묻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제 한가지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연수생 수입기관으로서 중기협이라는 단체, 지금 중기협과 수협, 건설협회가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기협이 가장 큰 규모이고, 중기협을 보면, 그쪽에 산업연수협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연수협력단의 전직 직원들이 처음에는 높은 사람부터 실무자까지 다 구속이 됐습니다. 뇌물을 받아먹은 혐의로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건 산업연수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 중에서 산업연수생의 이탈자 비중이 20%정도, 전체 불법체류자중에 1/5만 산업연수생 이탈자이고, 나머지는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산업연수제도를 왜 실시했는지를 보면, 산업연수제와 연수취업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는 게 입증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연수제를 94년에 실시하기로 하고 92년에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받았거든요. 올해와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 6만 2천명이 신고를 했었는데 그중에 2만 명 돌려보내고 2만 명 받고, 그 다음에 또 2만 명 돌려보내고 2만 명 받는 식으로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거지요. 말하자면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산업현장에 기능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제도로 산업연수제도를 만들었는데, 불법체류자를 그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낸 것은 이 제도가 철저히 실패한 제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내놓았다는 거죠. 95년에 아까 외국인인력의 3대 문제점, 인권침해, 불법체류, 송출비리 문제가 95년에 한번 폭발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00년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기반으로 한 법률안을 만들어 왔었고요.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엔 저도 실무작업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성과 혹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성과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7월 15일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 방안의 요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농업과 축산업에 확대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규모를 늘린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산업연수제도를 왜 살리느냐가 문

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거기에다가 농업과 축산업까지 넣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실은 공공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산하 공공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라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사용자단체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민들의 단체이고요, 건설협회는 건설업자들의 단체입니다. 농협과 축협이 합쳐졌으니까 농협에게도 이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권은 분명히 주었습니다. 근데 주는 건 좋은데 왜 그걸 산업연수생의 형태로 주느냐하는 겁니다. 연수제도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협에 연수생 배정을 하게 되면 중기협보다도 저는 정치적으로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농민의 아들이고, 혹은 선배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익가게 하느라고 그런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음식점종업원, 간병인, 환경미화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가정부요. 가정부가 문건을 보면 없어요. 가정부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업에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취업관리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내용상 그 전에 이야기해왔던 고용허가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취업관리제도를 농업에는 왜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왜 서비스업만 이것을 적용하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왜 외국국적 동포에게만 적용을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관리제도의 시행방식을 회한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 동포로 데려오고 일단 입국한 다음에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광비자로 왔지만 인정을 해주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 이걸 민족차별적이지요. 우리의 법률은 민족에 대해서 우리 동포라고 해서 특혜를 베푸는 것은 인정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한정된 이유가 뭔지. 이것은 1년 단위로 각 업종에다가 배분을 하라고 하게 되면, 제일 심각한 제조업은 왜 그대로 두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소제조업도 연수제도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걸 안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기간도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1+2제도로 3년 단위 아녘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2년을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불법신고로 자진 신고한 25만 6천명을 내년 3월 말까지 전원 출국시키고 새로



운 인력을 도입해서 그 공백을 대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불법노동자를 국가가 추방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문제는 이걸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5만 6천명이 자진신고를 하면서 돌아가겠다고 한 건, 특히 고용주의 동의 사인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정부가 신고를 안 하면 단속을 해서 강제 추방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실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는 단속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지금 2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면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너 드디어 우리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러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단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단속을 못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면 일단 둘러보낸 다음에 새로운 인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몇 달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책이 서있지 않다는 것이고, 중기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문제는 일단 먼저 자기네들 쿼터를 늘려주고 그이야기를 하자. 1년 안에 불부터 먼저 끄고 어떻게 해 보라는 이야기겠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무엇을 줘야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노동자 연구자들이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사용자를 단속하라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엄청난 벌금을 매겨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면 업주들이 겁이 나서 불법체류외국인을 함부로 고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을 해도 한국에 일자리가 없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회에서 어떻게 보면 법칙처럼 정립된 것은 사용자를 단속하라. 사용자를 단속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해 지금 단속을 못합니다. 지금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구 표 떨어지는 꼴을 보느냐 해서 단속을 못합니다. 올 연말까지 사용자를 강력하게 신고 안한 사람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12월부터 2월까지지는 새로운 정부가 오지 않습니까, 모든 짐을 새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 3월에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지금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총리실

박철언 국장님하고 한겨레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막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인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국인에게도 그렇게 하면 분명히 현행 법상 인권침해로 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7월 15일 발표의 경우, 누가 어떻게 이 대안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정책을 만든 주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95년 1월의 경우, 95년 명동성당 농성사건이 터진 후 만들어진 보고서가 있거든요. 보고서는 노동부인지, 당시 상공부인가요 그쪽에서 했지요, 그리고 관련 법무부와 합동 연구반이 만들어 졌고, 그 당시 노동연구원에 있는 어수봉박사가 대표집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동의견으로 고용허가제 등 3가지 안을 마련해 놓고 그래도 고용허가제가 가장 합리적인 안인 것 같다고 했었고요. 2000년의 경우는 민주당과 당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성과로 나왔고 정부에서도 나왔고, 그것을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고, 그리고 법률로 제정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어떤 전문가가 참여를 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기존의 전문가들이 제출한 연구의 성과를 철저히 뒤집으면서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흔적도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유력한 기존의 대안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는데,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국민의 의사도 전혀 묻지 않고, 그리고 법률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없이 현행 법령의 구석구석에 있는 조항들을 철저히 활용해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국인력'을 한번 쳐보십시오. 7월 15일 발표가 있었고요, 7월에서 8월까지 쳐보면, 거의 모든 언론의 사설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당장 철회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비도덕적인 제도'라고 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피니언 란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 기관에 있는 분들이요. 한 서너 편과 수십 편 이 정도의 비율입니다. 사설 중에서 이거 잘했다고 한 사설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한국경제에서도 못했다고 했고, 매경에서는 안 썼고요. 경제신문조차도 이건 문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아직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얼마만큼 잡아들일 수 있는가. 저는 불법체류자를 잡아들이지 말고, 불법고용자를 처



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세계의 출입국관리에 종사하거나, 이주조절(immigration control)을 다루는 학자들이 모여서 나온 정답이 있는데, 왜 그 정답을 회피하고 정답이 아닌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연수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던 말이죠. 저는 대안은 취업관리제를 전 업종에 확대실시하고 그것을 법률에 기반해서 실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용허가제도입니다. 박천웅목사님도 와 계시고 민주노총 이상학국장님도 있지만은 의노협이나 민주노총에서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동의 자유가 없는 한 완벽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완벽한 노동허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직업이동 자유의 노동허가제도는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제도입니다. 특히 단순기능직에 관한 한 완전히 사라진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정도 이동에 대해서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직업이동자유에 대해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고 단지 그것이 인권 침해를 유발할 정도의 범위가 아닌 한도 내에서,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가는 수준이 있으니까요. 그 수준을 통해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해서 기존의 7월 15일 발표이후에 언론의 사실들이 이렇게 하니깐 어떤 높은 분의 글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고, 고용비용이 증가하며, 노사분규가 우려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고용비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잡지기사 두 개가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나오는 [참여사회] 작년 12월에 실린 글과 [한겨레21]에 실린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기협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대단한 이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현실성 있는 답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이권이 있다면 이것을 그냥 뺏어오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권을 주라는 겁니다. 노동의 수입이 아닌 외국인력 수입의 이권이 아닌 거기에 알맞은 이권을 주고 이만큼의 수익사업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노예장사해서 하지 말고, 다른 수익을 정부가 주고 이걸 정부가 파괴하라는 것이죠. 그걸 왜 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논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지적한 고용허가제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허가제도는 불법체류문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연수제도를 거의 10년 했는데, 세계에서 불법체류 비율이 최고로 높아요. 고용허가제 실시하는 나라 중에서 불법체류자 10% 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 우리가 10년 간 했음에도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산업연수제도 자체가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못 했는데 왜 그 제도에 집착하느냐는 것이죠. 고용허가제도는 개방중심제도고 산업연수제도는 관리중심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식이 어디서부터 도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제도가 뭐가 다른지? 산업연수제도는 고용허가제도의 한 일종입니다. 고용허가제도는 학문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외국인노동자에게 취업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내주고요, 또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도 허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기술연수제도 혹은 연수취업제도는 고용허가제도예요. 노동허가제도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도인데, 문제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근로자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제도입니다. 거기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걸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단체와 이권단체화 되어 있는 것을 국가가 어떤 특정 부서를 지명하던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게 될 텐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중심제도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고용비용은 증가된다고 얘기합니다. 증가될 소지가 어디 있냐면, 퇴직금 문제 때문인데. 근데 퇴직금 줘야합니다. 모든 사람이 퇴직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수취업제 2년 주는 것과 3년 주는 것과 1년 차이인데 1년 차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현대판노예제도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임금이 아무래도 올라갈 것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지금 합법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가 월급을 많이 받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급 안올려 주면 다른 데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노동자의 자유가 있으면 임금은 시장임금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수생의 경우는 딱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법체류자가 10% 미만이고 90%이상이 합법체류자가 있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업주들이 나는 고급기능 필요 없고 단순기능만 원한다면 최저임금수준의 기본급으로 계약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노동계약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기본급이 올라갈 소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인 기업가들은 도망 못 갈 정도로 임금을 올려줍니다. 교육생도 지금 많이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기숙사비 그냥 줬어요? 근로자 임금에 기숙사비 정산이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건 기우입니다. 실제 업주들이 제일 잘 압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주 같으면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지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보다도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박천웅목사님처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하여튼 경제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양대 노총에서 와 계시지만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노동운동 배우러 온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돈 벌러 온 것이고요. 문제가 생기면 가담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에 국회예산 때 중기협 관계자들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현재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외국인력제도를 요약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99년과 2000년에 책을 냈는데요. 하여튼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요. 제도가 거의 1년 몇 년을 단위로 바뀌어 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제도가 누더기입니다. 91년 혹은 94년에 만들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들 때 일본을 모델로 해 논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학술적으로 어디서 어디 것을 베껴 왔다는 것을 다 밝혔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최종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종안을 먼저 봤겠죠, 그 시안 중에서 특정 이익단체에게 유리한 방안만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본과 닮아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체를 말씀드릴까요. 92년에 일본이 기능실습제 할 때 1+2제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2002년 1월에 되었습니다. 94년 실시할 때 1+2제도를 가져왔으면 최소한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일본도 고용허가제를 안하는데 왜 우리가 만드느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합니다. 태국도 합니다.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산업기술연수제도가 93년 4월

에 논의되었는데, 그 이전에 92년, 90년에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일본의 제도를 가져오는 것이었거든요. 일본의 정책이란 것이 이미 그때 잘못된 것이라는 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쪽으로 간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뭔가 외면되었다는 느낌을 그때나 지금이나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제도보다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우리 국가의 능력 자체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죠.

▶ 박천용 : 저를 이 자리에 오라고 한 건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실태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일거라 생각합니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교수님들이 잘 아실테고,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박사님이 발제하신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1+2제도라고 해서 연수취업제라고 살짝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 게, 다시 말해서 A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교복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B라는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전히 산업기술연수제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연수취업제도라고 바꾸셨는데, 여전히 산업연수제도다, 다시 말해서 처음도입이 되었을 때는 2년 연수하고 1년 연장 가능했어요. 1학년 제도였고요. 얼마 전에는 2년 연수에 1년 취업. 그러니까 2학년 제도입니다. 3학년제도는 1년 연수에 2년 취업이지요. 아직 졸업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학교 그 학생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 학생이기 때문에 연수취업제도라고 바꾸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들 그림전시회를 하고 외국인노동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말이 잘 안 통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자기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건 아마 사장님인 것 같고, 이건 아마 외국인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그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나 보니 손가락이 잘려있어요. 손가락이 잘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길 보니까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사장님은 이 사람들이 손가락 잘린 것 때문에 막 울고 있는데 사장은 뭘 생각하냐면 돈만 생각한다는 것이예요. 자기는 이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데 사장은 결국 돈,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접근하는, 예를 들어 돈 문제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너 손 잘렸으니 나도 참 가슴 아프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접



근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리얼한 것입니다. 인권이 없는 것이지요.

▶ **사회자** :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죠

▶ **이상학** : 형사처벌과 행정규칙, 불법 이런 것이 있는데.. 한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3~5년 체류하게 되면 결혼, 출산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문제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결혼, 출산하면 추방을 당하는데요. 그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우리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하겠지만, 장기체류일 경우, 즉 3년이상 장기체류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한달 정도 여행비자를 준다거나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광택**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관한 소개를 주셨는데요. 양대노동 보니가 공통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법적 문제, 어떻게 90만명의 인력을 왔다갔다 시키느냐, 이걸 행정적인 문제로 풀어야한다는 점은 동의를 하였지만 차이점은 고용 허가냐 노동허가냐 이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설박사님 발표문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차이점도 나타났거든요. 아까 비용증가부분에서 한국노동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고요. 서비스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설박사님은 +제도라고 했는데, 민주노동에서는 그 자체가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차이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여러 문제를 학문적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 **한건수** : 지금 사회자께서 요청하신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인류학을 하면서 아프리카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96년도부터 97

년도까지 나이지리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대사관에 몸을 피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나이지리아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한국인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부모님이 외무부를 통해 대사관에 어떻게 하든 이 딸을 추방을 시켜서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 둘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지리아에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 한 나이지리아 청년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청년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부인을 데리고 자기나라로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유창한 한국말을 하느냐 했더니, 이 사람 말이 맞으면 한답니다. 맞으면 유창한 한국말을 할 정도의 그렇게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도 아니었어요. 제가 나이지리아를 떠나면서 그 청년과 결혼한 한국 여자가 걱정이 되어서 떠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지리아 생활을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떨어졌을 때 그 두 사람이 겪어야 될 삶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귀국을 해서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만났던 그러한 식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노동자 수가 몇 명이나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적도 없고, 저는 제가 직접 만나서 조사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대략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몇 년 전에 국제이주기구 한국사무소 소장을 하셨던 분이 출입국관리소 직원분과 함께 출입국통계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최대 4,000명까지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하는데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열추 계산만 하더라도 제가 각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에 직접 가서 센 인원이 300여명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건 서울시내에서 일주일만에 연락이 되어 온 사람이니까 실제 거기 오지 않은 사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생각하면, 1,000여명 이상이 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노동자의 출신국을 따지면 20여 개가 넘어요. 물론 수적으로는 적지만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즘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소위 한국사회에서 노동을 하고 일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화적 갈등,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보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려고 이주노동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신 인력정책의 기술적인 사안이나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다룬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거나, 상담하신 분들, 이주노동자들, 문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현상, 한국 산업구조에서 필요로 한 어떤 문제, 필요악, 그리고 경제적인 권리 혹은 노동의 권리, 인권의 권리로서 파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사회의 30여만 명의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들이 관광객도 아니고, 관광객이라면 일종의 제한된 장소에서 한국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한국사회, 특히 지금 얘기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굉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정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급여를 가져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살고, 사랑도 하고, 친구로도 지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적지만 아시아권에서 온 여자와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들이 출생하고 거기서 한국전쟁이후의 혼혈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서의 혼혈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민주노총 이상학국장님 질문에 나와 있지만, 탈북자들의 신체를 연구해 본 결과 지금 10대의 평균 신장에서 10cm 이상의 신체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조건 자체에서 이미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통일 이후에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력정책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국사람들에게 다른 문화나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인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의 관점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책 때문에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인종에 대한 인종주의적 인식이 공공연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박천웅목사님이 관여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령 '국경 없는 마을'은 제

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지역사람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이웃 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경우는 이 '국경 없는 마을'이 유일한 경우고 또 사실 '국경 없는 마을'에서 행사, 이벤트의 경우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에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는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력정책을 경제논리, 산업논리, 인권의 논리로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정부가 가장 시급히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상학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한국정부가 지금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30만 명중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에서 노동한 이후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한뎃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난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버린 물건, 폐차장에서 차를 사고, 아니면 남대문시장에서 악세사리며 온갖 종류의 물건을 사서 컨테이너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무역공사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예산을 써 가면서 아프리카 시장개척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무역공사보다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노동해서 번 돈을 가지고 상품을 사서 보내는, 소위 아프리카 시장개척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폭넓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 아까 박천웅목사님은 그림을 가지고 우리 외국인노동자 실상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한건수교수님은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상학국장도 국제기준을 봐야한다, 결혼출산기가 추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한교수님은 더 뒷받침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체로 지금 나온 얘기는 노동부가 그동안 고심해서 고안해낸 고용허가제라든지 여기에 힘을 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부 내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는 가운데 이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나온 안에 대해 국회에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이견 안 된다, 이견 개선방안이 아니더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고려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정언기 : 앞에 발표하신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 저도 외국인노동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대체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꼭 지적을 한다면 설동훈교수님의 발표문 중에서 정부의 정책개선안이 나눠먹기식의 정책수립이 아니냐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학국장님이 7월15일 대책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우리 외국인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외국인력으로 인한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대책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권혜자국장님께서 중기협이 외국인인력을 관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4조의 제1항을 보면,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연수추천단체가 되어서 그 연수추천단체가 외국인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산자부장관이 중기협을 지적해서 중기협이 산업연수생을 담당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천웅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고 제가 감명 깊게 느낀 게 지난번 근무감독과정에서 제가 어떤 현실을 봤나하면, 불법취업장이 먼저 법의 제재부터 받고 산업연수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불법취업자가 우리 노동부에 와서 신고를 하면 추방당할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실례까지 봤나면 성남에 있을 때입니다만, 중국 동포가 진정서를 제출해서 담당감독관 앞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주가 코너에 몰리니까 핸드폰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하면, 그 근로자가 바로 일어섭니다. 나 진짜 떠날 테니까 가겠다. 이럴 때,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체류자들의 반한감정은 짐작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0년 12월 21일 외국인산업인력정책 심의위에서 산업연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나오듯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서 연수 취업기간의 연수1년 취업1년으로 변경했던 것을 다시 연수 1년 취업 2년, 1+2로 해서 12월 20일 개정해서 연수취업자와 관련된 것을 저희 노동부에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 규정과 관련된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7월 15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불법

체류자 취업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는데, 설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빠진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종 도입의 연수생, 연수취업자 총 동원관리제를 실시하고 불법체류자 출국예산 부족 등을 감안해서 지금현재 연수생 8만 5,500명에서 14만 5,5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체류방지를 위해서 산업연수생 위탁관리제, 지금 우리나라에 20개정도의 위탁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 작업은 송출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업종의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취업을 허가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담당하시는 자진신고 불법체류자를 원칙적으로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도록 각종 강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정된 게 8월 29일에 외국인력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외국인력정책개선대책을 다시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실무자로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 즉 F-1의 최고자격을 부여해서 국내입국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취업활동의 자격을 허가하도록 노동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업종과 직종은 음식점업, 상업, 지역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사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외의 것은 전면금지하는 것으로 관계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쿼터를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취업허용은 신고된 불법체류자 실태를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했는데, 업종과 취업허용에 대한 것은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기간은 대략 1년 허용,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절차는 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한다. 고용안정센터는 외국인 구인노력, 즉 1개월 정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구인이 가능하면 동포를 추천하고 표준근로계약을 채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법무부에도 국적동포가 노동부가 알선한 사업장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시 근로를 허가한다. 그 시행시기는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취업관리제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하고 우리 노동부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주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관한 노



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외국인 고용신청을 하고 내국인을 수용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 외국인을 고용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도입절차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공단사업주 단체들이 복수의 투명한 절차를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연수제도는 중기협에 독점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기협중앙회가 외국송출기관을 지향하고 송출기관 및 쿼터를 지금 중기협이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설동훈교수님 보고서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다. 송출과 연수생선발을 송출기관이 컴퓨터추첨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규를 적용하고 국내취업을 3년 간 보장하는 것을 노동부에서 주장을 했었고, 이것이 고용허가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무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에서는 법률상 인력부족과 불법체류자 문제, 그리고 외국인 인권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가 가장 타당한 바람직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력 제도의 급속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 즉 법무부에서도 나오셨지만,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갑자기 들여왔을 때 노동시장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더 양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법무부나 관계부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비리, 연수생이탈,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기로 조정된 것입니다. 근데 왜 서비스업에만 한정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나? 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서비스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5만에서 7만 명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중국동포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산업연수제도는 갑자기 없앨 수 없으니, 순수한 기술연수제도로 발전시키고 외국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노동부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고심하신 부분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송출비리

는 인정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법무부의 걱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죠.

▶ **법무부** :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서비스 협상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인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미숙련노동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주노동자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수의 미숙련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하나는 간단합니다. 전문직종의 노동력은 개방하고 유입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미숙련노동자, 다수의 인력은 도입을 금지한다는 것이 지금 선진국의 정책입니다. 그 때 협의된 게 다수 외국인력의 유입은 억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WTO가 계속 협상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APEC이라든지 국제회의에 계속 나오는 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 중간쯤이라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불법체류자가 많으니까,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하고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일본은 91년에 규제를 해서 불법체류자가 많으니까 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파카스탄, 방글라데시와 인정협정을 정지하려고 하니까 경제부처라든지 외교부서에서는 만약 그랬을 때 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입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논의가 되죠.

지금 세계의 흐름은 유럽 쪽에는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단속하려고 하고, 미국도 지금 9.11 테러 이후에 타이트하고, 호주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다만 캐나다 조금 여유가 있죠. 세계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여력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외국인 인력이 확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다 받고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법무부에서 출입국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우선되는 것은 국내 노동력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여성인력, 고령자, 실업자가 많은데 그 인력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도입을 법무부에서 추진해요, 근데 노동성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성에서 89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 노동성 산하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것이 사회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노동성 입장이 뭐냐면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대체해서는 안 된다, 여성노동력, 고령자를 먼저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용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지 않느냐, 국내 노동인력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다음에 해외동포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인력 문제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되어, 체류자격을 주게 되면, 고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력 정책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통일이라든지, 해외동포 인력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방금 설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동포에 대해서 동포를 왜 차별하고 또 혜택을 주느냐고 하시는데, 출입국관리법 상에 출입 자체는 합리적 차별을 추구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가를 따지고 비자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산업연수제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91년에 일본에서 연수제도가 실행될 때, 연수제도를 확대했고, 일본계 라틴계를 그냥 들어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식자격을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일본에 23만~26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저변 노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수제도 자체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변노동력이 깔린 상태에서 이 연수제도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유학생, 대학연수생들을 도입하려 해서, 그래서 지금도 국비유학생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또 활동허가를 줘서 취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지금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유학생 13만 명중에 6만 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저변노동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산업연수제도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취업제 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선생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제가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예, 그럼 논의에서 빠진 부분과 상처되는 부분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학 :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노동허가제를 주장할 때, 고용허가

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외국인노동자를 마구 들여오자, 이 얘길 하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기업 쪽에서 들여오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무제한적으로 대체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력의 일자리를 뺏기고 일종의 사회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문제지 외국노동력을 마구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종 개방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무슨 대책을 갖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아까 총량이나 기간 등 이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노동력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노총에서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임금 주라는 것도 국내노동활용을 방지하자는 것이죠. 또 노동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중소기업일 경우 국내노동시장임금을 주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산업정책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지원을 하던지, 퇴출시키던지요.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지금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외국노동력 풀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요, 중국동포문제도 그게 과연 혜택인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과도 일부는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시 모국으로 들어 왔는데 두들겨 패고, 임금 안 주고, 이렇게 한 게 과연 민족의 대우인가? 같은 민족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포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권혜자 :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현 출입국관리법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보면, 지금 재경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부,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연수취업제도는 폐지되고 전체적인 관할, 외국인력의 규모와 관리는 노동부로 이관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출입국관리, 법무부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타 부서에서 참관인과 의사개진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출입국관리는 법무부, 규모결정과 사후관리는 중기청도 아닌 중기협 쪽에서 각기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노동력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대 노총이나 비정규노동자, 또 NGO 대표들이 전부 다 의사



결정과정에서 빠져있다는 겁니다. 협의조차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국내노동력으로의 대체문제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마치 국내노동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심각한 문제는 노동경제 쪽 일부에서 여성노동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청년이나 젊은 여성노동하고 지금 외국인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는 인력의 적성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비정규직 부문에서 어떤 일정한 연령이상의 단순기능, 중고령자의 고려, 이후 고령화 사회 속에서 그 노동자들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내 노동력이 기피한다고 해서 그 시장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하층노동계층을 외국인노동자로 만드는 그런 식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설동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정부의 외국인인력정책의 기초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국민 우선의 정책, 이 건 법무부에서 오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인력의 수입규모와 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투입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완성의 원칙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노동시장의 보완성의 원칙, 이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 노동자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 한해서 노동시장의 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망하게 하던가, 그게 안되면 일단 그 공백을 일시적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을 수입하게 되면 국내에서 노동자인 이상 일체의 차별은 없어야한다는 것이죠.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국민 우선의 정책이고요.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동등하게 대하라는 게 그 기본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기술인력에게는 이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보다 훨씬 많이 받죠. 그래서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전혀 문제가 안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즉 노동자이긴 하나 근로자는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근로자로서만 대하면 법률적으로 일단 보호가 된다, 아까 권혜자 선생님이 결국은 고용비용이 다운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고용비용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분들이 한

국민 노동자에 비해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할 때, 한국말을 잘 못하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은 차등이 아니죠. 합리적 차등인 것이죠. 독일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재미 있는 법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기존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임금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았을 때, 남들보다 훨씬 싼값에 적은 임금을 받고 취직을 한 경우, 그렇게 되면 독일인 노동자에게 피해가 되니까 독일 노동성에서는 그 사람의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한국에 들어 왔다면 최저임금 이상에서 자유로운 노동계약이 이루어지지만 될 것이다. 첫 번째 핵심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직업이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까지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도 사실 국제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만 보더라도 5년 이상인 사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정부에서는 2000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5년은 절대 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아마 그건 철저할 겁니다. 다만 제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큰 줄기가 잡혀진 다음에 관련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이틀 정도 씨름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해결 못할 의견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냐면, 저는 지금 밀실합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는 이번에 큰 이권을 놓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력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 거리가 없었는데, 엄청난 일거리를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걸 보면, 외국취업관리를 귀납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납적으로 접근 하면 빠진 부분이 있어요.

▶ **법무부** : 잘 못 해석하시는데요. 간병인 자체는 아예 안되어 있고요. 가정부는 하려고 합니다. 아직 큰 업종만 확정을 했는데, 이것을 발표를 할 때, 한국표준분류표에서 분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세부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업종을 선택하다보니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 **설동훈** : 선생님,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노동시장보완성의 원칙이라고 말한 부분, 즉 국내인력으로 충원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보는데요. 서비스노동의 경우는 시장이 개방되면 폭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의 경우 집사람이 일을 하고 애가 둘이거든요. 애를 누가 보냐면 지금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시장이 개방되면 저도 기꺼이 쓸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는 비싸니 못쓰고, 지금 현재 제가 이주노동을 공부하니 미등록노동자는 못쓰겠고요. 하여간 노동시장보완성의 원칙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큰 게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부터 접근을 했는지... 제가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 **법무부** : 제조업분야는 산업연수제로 가고, 서비스는 해외동포만 하겠다는 겁니다.

▶ **설동훈** : 저는 법무부에서 오신 분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야까 산업연수제도도 과잉양산제도고 고용허가제도도 개방중심제도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과연 노동시장개방을 할 능력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개방했다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부정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외국인력이 아니더라도 우기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인력을 크게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무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으니까 불법체류자 비율을 낮추면서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자는 것이고, 다른 인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외국인력 관련제도, 고용허가제도든, 취업관리제도든 이런 것을 전 산업으로 확대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 **법무부** : 경제부분은 간과한 상태에서 외국인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인력을 쓰느냐, 안쓰느냐는 우리 구조조정이 바뀌어야지, 제가 산업현장에 가보면 특히 영세한 곳을 가면 제가 5분을 못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사람이 가느냐고요. 지금 그런 업종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하는데, 지금 정

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그런 업종을 거의 다 버렸어요. 모든 것이 한쪽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산업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우선 산업구조조정도 되고 안정이 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것도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 **설동훈** :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미 개방되어 있고, 현실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지요, 그걸 정부가 관리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지요. 정부가 현재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나왔는데, 당장 내년 3월에 26만명의 추방이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결국 또 들어오면 재탕, 삼탕이 되는 것이고,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송출비리와 관련된 겁니다. 독점을 폐지해야겠죠. 송출업체가 독점이 되고 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중기협에 뇌물 바치고 악순환이죠, 독점을 없애야죠. 송출업체도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발과정도 선발장치를 정부가 공정하게 관리하거나 정말 신뢰할만한 기관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용허가제나, 현행유지나 인데, 새로 도입하는 연근해업은 고용허가제로 시도를 해 봐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고 미진한 토론은 향후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동안 발표, 토론해주셔서 감사합니다.